

08 특별한 전북만의 인센티브

I.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71호)

지원 대상	지역 분류	지원 유형	지원범위			기 타
	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수도권 이전 · 개성공업 지구 현지기업	균형발전 중위지역	입지	-	토지매입가액의 10%이내	토지매입가액의 30%이내	* 국비보조비율 - (균형발전중위지역) 보조금의 최대 65%
		설비	설비투자금액의 5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7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9%이내	
	균형발전 하위지역	입지	-	토지매입가액의 20%이내	토지매입가액의 40%이내	* 지방비 부담 3:7 - (균형발전하위지역) 보조금의 최대 75%
		설비	설비투자금액의 8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11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14%이내	
신 · 증설	산업위기 대응지역	입지	-	토지매입가액의 25%이내	토지매입가액의 50%이내	* 지방비 부담 5:5 동부권은 7:3
		설비	설비투자금액의 11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19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24%이내	
	균형발전 중위지역	설비	설비투자금액의 5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7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9%이내	* 지원한도 : 국비 100억원
		설비	설비투자금액의 8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11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14%이내	
지원대상 (8조)	신증설	설비	설비투자금액의 11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19%이내	설비투자금액의 24%이내	* 소부장기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의 지원비율 적용
	- 수도권이전(9조), 신증설(10조), 상생형일자리(10조의2),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(12조) 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(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시 보조금 신청 可) *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 건설업 포함기업 예외적 지원 가능 규정					
	- 폐건물 매입시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의 폐쇄화사실 객관적 입증 要(기준공장폐쇄확인서 및 산단공 현장실사)					
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(9조)	- (기존사업장) ①수도권과밀억제지역권역에서 연속 1년 이상 사업영위하거나 본사, 연구소 등을 둔 법인 ②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※제15조(지원특례) 10명 이상 적용 특례 有					
	- (투자사업장)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본사, 공장,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②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(3자리숫자)에 속할 것 ③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+ 투자금액 10억원(대기업은 300억원) 이상 ④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要(불가피 사유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委)					
지방 신증설 투자 (10조)	- (신설) 사업장 신축 or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or 폐건물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시설 설치 - (증설)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 설치 - (지원요건) ①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② 기존사업장(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)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③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% 이상(최소10명) *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,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 ④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(대기업 300억원 이상) ⑤ 기존사업장 유지(매각, 폐쇄, 임대, 축소, 금지) *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*보조금 신청전 1년 이내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기존사업장 처분이 있을 경우 보조금 결격사유에 해당					
	- (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) 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또는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 결정 ② 사업재편기업 ③ 기업 보육공간 입주계약 해지 후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하는 경우					
지원내용 (13, 14조)	- (입지보조금) 기존사업장 면적 × 5 ×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*신 · 증설은 해당없음 *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국비지원 한도 5억원					
	- (설비보조금) ① 건설투자비(폐건물 매입비 불인정) ② 기계장비구입비(중고구입 불인정 원칙). ③ 근로환경개선시설비(건설투자 및 기계장비 구입비 10% 범위내에서 인정, 투자사업장 내 설치로 한정)					

지원특례 (1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가산(설비보조금 지원비율에 2~10% 가산) - ★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: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에 최대10% 가산(대기업 3%, 중견 5%, 중소 10%) -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(군산군산2국가산단, 익산국가산단) 소재,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·투자하는 기업, 첨단투자지구에 입주·투자하는 기업 등 :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에 2% 가산 - 상생형일자리기업 가산(대기업 3%, 중견 5%, 중소 10%) → 신규고용인원 가산 합산 불가 -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은 최대 2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역특성화업종 가산과 구조고도화단지·소부장특화단지·첨단투자지구 등 입주기업 가산은 합산 불가 - 수도권기업 이전 고용인원 완화(10명) - 균형발전하위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이전시 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: 대기업(10조3항)에도 불구하고 150억원, 타당성점수(17조3항)에도 불구하고 50점)
투자협약 (1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要> - 입지보조금 포함 신청하는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(당초 면적보다 확대 시 변경계약 체결일) - 설비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 경과하면 만됨 * 상생형일자리기업은 상생협약을 투자협약으로 간주
보조금 신청 (17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(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 이상) - 신청기한 : 설비보조금(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), 입지보조금(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,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은 개별신청 不可(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못함) -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- (보조금 신청 不可한 경우) *상생형일자리기업은 ③을 적용하지 않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선행투자 진행중인 기업으로 선행투자 정산 완료 이전 ② 선행투자 정산결과 투자금액 달성을 및 고용인원 달성을 70% 미만 ③ 부채비율 500%이상 이거나 원전자본잠식 상태 ④ 정부 보조금 및 고시의 금지·의무규정 위반으로 환수 처분 ⑤ 투자 또는 사업이행 포기 후 보조금 반납한 경우
보조금 교부 (1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보조금 환수 담보 확보) 지투보조금 지급액 110% 설정. 부동산 가액의 60% 범위 내에서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이행보증증권의 경우 연차별 차감 가능(단, 신용등급이 미흡(CC) 이하인 경우 연차별 차감 불가) - 보조금 지급 : 입지보조금 (전액), 설비보조금(2차례 나눠 지급-착공신고 확인 후 70%, 정산후 30%)
투자수행 (20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신고. 심의위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해야 함 - (시제체장 및 산업부상관 승인사항) 투자기간 연장, 주요 설비투자 내역 변경, 투자사업상 이전, 주업종 변경, 기업소유 변경, 중요재산의 양도·교환·대여,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
중요재산의 부기등기 (20조의 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요재산 종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(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,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)
보조금 정산 (2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지자체장에게 보조금 정산 신청(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 가능) - 정산검증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(재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불가)
사업이행 (2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(정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) - (지자체장 및 산업부상관 승인사항) 투자사업장 구성 변경, 주업종 변경, 기업소유 변경, 중요재산의 양도·교환·대여,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-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
보조사업 종결 (23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- 유지대상 기존사업장의 고용이 유지되고,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고용계획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보조금 추가 지원(추가고용인센티브)

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(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별표1)

- ①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(강화군,옹진군,서구 대곡동·불로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(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)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)
- ②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파동, 이파동, 삼파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, 도농동만 해당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)은 제외)



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

